

프로젝트박스 시야 대관규정

제 1 조 (대관 규정의 목적)

이 규정은 (재)우란문화재단의 프로젝트박스 시야(이하 '시야'라 한다)의 대관에 따른 규정을 밝히고, 대관기간 중, 명시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관의 정의)

- 1)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'공연', '교육', '행사', '연습'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연장의 시설 및 부가장비들을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대관자는 대관에 관련한 모든 규정을 받아들이고, '시야'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람 혹은 단체를 말한다.
- 3) 대관 기간 중 모든 시설 및 시설의 관리와 유지, 안전 및 출입에 관한 모든 관리권한은 '시야'가 갖는다.

제 3 조 (대관의 종류)

- 1)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,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,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재단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심사, 승인, 확정한다.
- 2) 대관은 그 목적에 따라, 공연대관, 행사대관, 교육대관으로 구분하며, 공연대관은 준비대관, 연습대관, 공연대관,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.

제 4 조 (대관의 범위)

본 대관규정이 적용되는 대관의 범위는, '시야' 공연장 및 기타 공간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제한한다.

제 5 조 (대관의 신청 및 승인)

- 1) 대관공고는 우란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,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대관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 지정된 기타첨부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대관의 심의는 '시야'의 대관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며,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거나, 대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3) '시야'는 신청기간 마감 후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자에게 대관승인 여부를 통지해주어야 한다.

4) 대관 신청자는 대관승인 후, 지정된 기한 내에,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대관 심의기준)

- 1) 대관의 승인 여부는 극장장이 결정하되,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의 목적아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2) 대관일정의 경합 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신청작품의 확장성
 - 나. 신청작품의 우수성
 - 다. 신청단체 및 참여인력의 신뢰성
 - 라. 신청작품의 교육성

제 7 조(대관자의 의무 및 책임)

- 1)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극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2)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 내역 및 무대설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본대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3) 극장장은 필요에 따라, 계획서의 검토 후 대관자가 원하는 추가 시설의 이용 및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.
- 4)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 **책임**을 진다. 단, 제 1 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.
- 5) 대관자는 초대권 발행 매수를 ‘시야’ 와 협의, 결정하여야 한다.
- 6) 대관자는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대관료 및 추가사용료)

- 1)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, 시설 유지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규정하여 부과한다.
- 2) 대관자는 대관 계약시 30% 에 해당하는 대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한다. 대관료 잔액은 대관일 15 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3) 극장 스태프의 인력이 필요할 시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.
- 4) 기본 대관료 외에 추가되는 부대시설비의 경우, 최소 공연시작 1 주일 전까지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며, 공연 중 또는 철수 중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공연 후 1 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(부대시설비의 세부내역은 극장 자체 규정에 따른다.)
- 5) ‘시야’ 는 대관자가 사전에 협의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22 시를 기준으로 시간당 250,000 원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9 조(대관료의 반환)

- 1)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시야’ 측과의 충분한 협의 후, 대관료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-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
 - ② ‘시야’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 - ③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2) 위 사유를 제외한, 대관의 일방적인 취소 시에는 대관료의 30%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.
- 3) 대관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대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향후 1년간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 10 조(대관의 변경)

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임의로 공연내용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. 단,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을 신청하여 공연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1 조(대관의 취소)

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- ① 소정의 대관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
- ② 대관 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이나 행사를 할 경우, 다만 당해 공연이나 행사 30일 전까지 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 극장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③ 대관 조건이나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
-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 12 조(대관의 제한)

- 1)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한 경우
- 2) 다음의 항목 중,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1년간 ‘시야’의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 - ① 과거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의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
 - ② ‘시야’의 공연 중지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
 - ③ 대관자가 ‘시야’에 제출한 서류나 증빙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

3)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

제 13 조(손해배상 등)

대관자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4. 2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4 년 2 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, 매년 목적에 따라, 변경될 수 있다.

제 2 조 본 규정은 ‘시야’ 와 대관자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